기 술 용 역 표 준 계 약 서					계약번호 제 S-201801-01호
계 약 자	발 주 자(갑)	상 호	(주)서울시스템	사업자번호	113-01-12345
		대 표 자	홍 길 동	전 화 번 호	02-123-4567
		주 소			
	수급사업자(을)	상 호	㈜인천시스템	사업자번호	264-12-12345
		대 표 자	임 꺽 정	전 화 번 호	02-789-4567
		주 소			
계 약 내 용	용 역 명	SW기술 개발 및 지원			
	계 약 금 액	일금 일억 원 정 (₩ 100,000,000) 부가가치세 별도			
	계약보증금액	해당사항없음			
	지 체 상 금 율	일당 2.5/1000			
	계 약 기 간	2018년 01월 01일 ~ 2018년 12월 30일			
	기 타 사 항				

발주자(갑) (주)서울시스템과 수급사업자(을) (주)인천시스템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기술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,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한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붙임서류: 1. 기술용역계약조건 1부

2018. 01.01.

발 주 자(갑) (주) 서울시스템

대표이사 홍 길 동 (인)

수급사업자(을) (주) 인천시스템

대표이사 임 꺽 정 (인)

기 술 용 역 계 약 조 건

제 1 조 (계약문서)

본 계약문서는 용역계약서, 기술용역계약조건으로 구성되며,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.

제 2 조 (용역과업의 범위)

- ① "을"은 "갑"의 지시에 따라 위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능률적이고 성실하게 완료해야 한다.
- ② "을"은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용역의 사소한 변경이나,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의 변동없이 수행하여야 한다.
- ③ 재난안전 공동활용시스템 구축 관련 개발 컨설팅 및 관련 문서 및 기술사업관리

제 3 조 (용역의 착수)

"을"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.

제 4 조 ("을"의 준수사항과 일반적 의무)

- ① "을"은 본 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자료, 작성한 성과물, 획득한 자산등에 대하여는 "갑"의 승인없이 양도, 담보, 처분등을 할 수 없다. 또한 용역의 완성과 동시에 이와 관련 된 것들을 "갑"에게 인도해야 한다.
- ② "을"은 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자료, 지식, 또는 국가의 비밀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.

제 5 조 (감 독)

- ① "갑"은 "을"의 원활한 과업수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"을"에 대한 필요한 업무감독을 할 수 있다.
- ② "을"은 필요에 따라 원 발주처의 지시를 받아 과업을 수행할수도 있으며 이를 즉시 "갑"에게 보고해야 한다.

제 6 조 (계약의 변경)

본 용역의 과업 수행중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"갑" "을"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 이에 따른 계약금액의 변경도 "갑" "을"이 협의 결정한다.

제 7 조 (선 급 금)

- ① "갑"은 "을"의 용역수행에 있어 선금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원 발주처로 부터 지급받은 비율에 의해 "을"에게 선금급 할 수 있다.
- ② "을"은 선금급을 잔액 정산하기 전에는 채권양도 등을 할 수 없다.
- ③ 선금급을 지급받은 후 다음의 경우에 "을"은 즉시 선금급 잔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"을"의 귀책사유로 선금급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법정이자 상당액(일반은행의 대출금리수준)을 가산하여 반환해야 한다.
 - 가. 계약을 해약하는 경우
 - 나. 선금급의 타용도 사용등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
 - 다. 선금급 반환이 불가피한 경우

제 8 조 (대금지급)

"을"이 과업을 완성했을 때에는 그 성과품을 "갑"에게 제출하고 "갑"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용역비는 세금계산 서 발행 후 7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.

- ① 선급금의 지급: "갑"은 "을"에게 발주처로 부터 지급받은 비율에 의해 "을"에게 선금급 할 수 있다.
- ② 잔금의 지급: "갑"은 "을"에게 "갑"이 고객사로부터 대급을 지급받은 후 1주일 내 현금 지급한다.

제 9 조 (계약의 완료)

"을"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작성 제출한 최종 성과물에 대해 원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고 그 대금을 지급함으로 써 본 계약을 종결한다.

제 10 조 (해 약)

- ① "갑"은 다음의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.
 - 가.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기일까지 착수하지 못할 때.
 - 나. 준공기일까지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준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.
 - 다. 과업수행에 있어 성실하지 못하거나 명백한 태만으로 인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.
- ② "을"은 해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 "갑"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, 대금은 기성부분으로 정산한다.

제 11 조 (보완 및 배상책임)

- ① "을"은 계약완료 후에라도 원 발주처에서 하자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.
- ② "을"은 과업수행의 하자가 원인이 되어 "갑"이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.

제 12 조 (지체상금)

일당 2.5/1000

제 13 조 (보완책임)

"을"은 과업수행 중이거나 과업 완료후 발주처나 본 과업에 대한 해당 관청으로부터 본 과업분야에 대한 보완 사항을 지시 받았을 경우 지체없이 지시내용을 보완하여야 할 의무를 갖는다.

제 14 조 (비밀엄수)

"을"은 본 과업수행 과정을 통하여 발생된 자료나 비밀사항에 대한 계약전후를 막론하고 누설해서는 안된다.

제 15 조 (분 쟁)

- ① 계약조건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기타 발생하는 문제 및 분쟁은 "갑" "을" 쌍방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.
- ② 제1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관계법률에 따른다.

제 16 조 (해석의 결정)

본 계약상 어구의 해석 또는 계약사항 이외의 계약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"갑" 과 "을"간의 의견이 다를 때에는 "갑"의 해석이 우선한다.

제 17 조 (기 타)

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"갑" 과 "을"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 다.

제 18 조 (분쟁의 해결)

-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.
- ② 분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관할법원으로 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.
-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 19 조 (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)

계약담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